

kiri Weekly

2012.4.16 제178호

이슈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포커스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3: 보험요율의 형태

국내금융 뉴스

금융위,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동양생명 매각 성공 가능성은?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금융기관들의 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논란

유럽 _ 스페인 위기 조기 불식을 위한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시사

일본 _ FY2011 일본 손해보험 대형 5개사 보험료 수입 증가

중국 _ 세계은행,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기형 금융정책실장

요약

■ 보험과 공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험업의 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됨.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법규를 적용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공제 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였음.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수 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의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근거법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함. 공제가 「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면허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음.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크게 낮추었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자산운용,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음.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회사들에게는 사업모형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기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가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태에 있음.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의 차이가 보험산업 내에서의 공정경쟁 훼손과 취약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일원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근거법이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범주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험업 전체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함.

1. 검토배경



-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불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대형 공제도 「보험업법」상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공제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내에서 보험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보험회사와 공제는 상이한 규제·감독을 받아왔음.
 -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체국보험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되며, 신한, 새마을금고, 수협은 발효일 2년 후인 2014년 3월 15일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¹⁾
 - 그러나 대형 공제 외의 다수의 공제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험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²⁾
- 공제와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대량의 동질위험 집단을 구성하고 약정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 경제적 손실 보전”이라는 보험업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³⁾ 2011년 현재 보험업 영위회사는 총 150여개일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공제는 1970~80년대에는 많지 않았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설립이 확산되면서 2011년 현재 90여개⁴⁾로 추산되며 40개 민영보험회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9개사)⁵⁾를 초과하고 있음.
 - 공제의 설립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민영보험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자의 리스크 전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공제가 특정 리스크별 전문인수기관으로 확정되어 보험업의 이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1) 이기형(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험분야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KiRi Weekly』 제159호, 보험연구원.
 2)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3) 「상법」 제638조(의의)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부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5) 회사 수에서 지점은 제외한 것임. 지점(손보 9개사, 생보 라이나, AIA)을 포함하는 경우 53개사임.

〈표 1〉 2010년 보험업 영위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분		회사 수	보험료	점유비	가입자 제한여부
민영 보험	생명보험	23	830,074	59.5	불특정
	손해보험	30	513,446		불특정
	소계	53	1,343,520		
공영 보험	국민연금	1	245,602	33.4	전국민
	국민건강	1	284,577		전국민
	산재보험	1	45,993		근로자
	공무원연금	1	84,232		공무원
	수출보험	1	4,848		수출입기업
	우체국	1	69,470		불특정
	사립학교	1	20,269		사립학교 교직원
	소계	7	754,991		
공제	농협	1	97,227	7.1	불특정
	수협	1	8,665		불특정
	새마을금고	1	13,716		불특정
	신협	1	5,533		불특정
	기타	8(78)	33,977		업종에 따라 특정, 불특정함
	소계	12(92)	159,118		
보험업 전체		72(150)	2,257,629	100.0	

주: 공제의 기타의(78), 소계(92), 보험업전체(150)는 금융감독원의 공제조사결과 93개 공제를 감안한 경우임. 또한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은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2010년도 보험통계연감』에서 작성함.

■ 공제기관의 증가 원인은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업법」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모색하는 주요국들과는 상이한 점임.

- 공제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⁶⁾ 뉴욕 주는 1920년부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1997년부터 「보험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국가들도 EU 지침에 따라 「보험법」 적용으로 편입하였음.
- 국내 보험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공제에 대한 감독체재를 마련하였음.

6)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공제(fraternal society)와 보험회사가 공존하였으나 1849년 뉴욕주가 신규 설립회사에게 자본금과 잉여금을 요구하게 되자 공제조합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1980~90년대에 들어 민영생명보험시장의 50% 이상을 공제가 점유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오다 1920년부터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80% 이상의 추가 지급능력을 규제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1930년에 공제의 점유비는 8%로 떨어짐.

- 이에 본고는 국내 공제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공제기관을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여 보험업의 공정경쟁 원칙 확보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모색할 있는 방법을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2. 국내의 공제현황 및 문제점



가. 공제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를 규제하거나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공제의 정의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비해 유럽은 공제를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에 대해 보증, 구제(province) 또는 저축, 보험, 의료보조, 신용, 기타의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제의 종류는 멤버의 구성 범위를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조합공제와 한정하지 않은 일반공제로 구분할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 지원이나 조세 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성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1937년 수산업협동조합 설립으로 시작된 공제는 2011년 현재 60개의 다양한 공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호 부조형 공제를 제외하면 48개임.
 - 세부적으로는 일반 공제 4개, 조합 공제 40개, 정책성 공제는 4개가 운영 중임.

〈표 2〉 공제와 보험회사 비교

설립	신설 공제 수				합계
	일반공제	조합공제	정책성 공제	소계	
1950년 이전	1(수협)	1	-	2	2
1960년대	1(농협)	3	-	4	6
1970년대	-	2	-	2	8
1980년대	1(신협)	7	-	8	16
1990년대	1(새마을)	7	1(건설공제)	9	25
2000년~05년	-	10	1(과학기술인)	11	36
2006년 이후	-	10	2(노란우산, 경기사회복지)	12	48
연도 합계	4	40	4	48	-

주: 오영수 외 2인(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p. 37에서 정리함.

■ 공제는 동질위험집단을 대량으로 풀링(Pooling)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보험업상의 보험회사와 동일하나 일반 공제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업임.

-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 가운데 회원이 기금을 각출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조합공제는 상호회사와 유사함.
- 일반 공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반 공제는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의 범주에 해당하지도 않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보험업임.

〈표 3〉 공제와 보험회사 비교

구분	보험회사		공제	
	주식회사	상호회사	조합공제	일반공제
회사설립	상법, 보험업법	상법, 보험업법	민법, 해당법규	민법, 해당법규
소유	주주	회원	회원/기금	-(기금)
운영목적	영리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계약자	불특정다수	회원	회원	불특정다수
영위종목	모든 종목 혹은 일부종목 영위가능		특정종목	특정종목, 모든종목
운영주체	회사	회사	협회, 공제기관	협회, 공제기관
계약자보호	예금자보험, 제3자보호기금		-	-
모집방법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대리점	-	-
규제법규	보험업법	보험업법	해당법규	해당법규
감독기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해당부처	해당부처

-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기관이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관련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⁷⁾
 - 2011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3개 공제 중 공제상품을 만들어 요율, 판매, 손해사정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를 취급하는 곳은 54개에 이룸.
 - 공제감독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20개, 국토해양부 17개, 각 시·도교육청 13개, 지식경제부 10개, 환경부 6개, 행정안전부 5개, 공정거래위원회 5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들어 공제의 설립 근거법이 우후죽순 형태로 제정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부재한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도 다수 존재할 수 있음.
 - 최근 설립되는 공제는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는 공제도 있으며, 보험시장을 통한 보험 가입이 곤란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제는 의료사고공제를 들 수 있음.
 - 또한, 아주 특수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는 점임.
 - 예를 들면 예술인 공제, 폐기물처리업체공제, 주택관리사공제, 녹색제품구매공제, 소방사 공제, 사회복지사공제 등 다수가 존재함.
 - 대부분 관련 분야의 조합이 운영한다는 점임.
 - 이는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업법」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시장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공제의 문제점

- 공제와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과 「상법」 등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 반면에 공제는 받지 않음으로써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모순됨.
 -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경우 공제조합에 대해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 4대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7)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 대부분의 공제가 관련 산업의 협회 또는 단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업과 협회업무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업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본체 내 겸영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제기관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내·외부의 충격으로 공제사업 경영전반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
 - 또한, 공제기관의 경영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적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 즉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수 있음.

- 90여개의 공제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관련 업무의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재무건전성이 훼손된 경우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에 노출됨.
 - 금융감독원이 공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존재하며 보험업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 기초서류 협의를 요구한 바 있음.⁸⁾
 - 또한, 공제조합의 경우 투명한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파산 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소비자의 피해와 국가적 부담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음.

- 보험업에 대한 일관적인 감독정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와 보험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공제계약과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계약 자료가 집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한 역선택과 보험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임.
 - 대부분의 공제는 손해보험의 영역의 특수한 리스크(재물손해, 상해손해, 보증손해, 보증리스크 등)를 주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어 손해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0. 4), 「유사보험 영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기사 관련.

3.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배경 및 특징



가. 도입배경

- 일본은 2004년까지 공제⁹⁾가 급증하였는데 정보공시 결여, 모집 시 설명의무 태만 등에 따른 계약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2006년부터 조합의 목적과 가입대상을 불문하고 공제를 「보험업법」으로 편입하였음.
 -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를 감독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음.
 - 공제에 대한 보험업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보험업법」 시행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에는 공제를 특정 보험업자로 규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2년 후에는 소액단기 보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음.¹⁰⁾

나. 소액단기보험업의 특징

- 소액단기보험업은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보험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필요 자본금(기금)은 일반 보험회사의 1/10에 해당하는 최저 1,000만 엔임.
 - 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중 「보험업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공제는 계약자 집단이 제한되어 있는 일반 회사 내 공제, 학교 내 공제, 계약자 1,000명 이하 소규모 공제 등임.¹¹⁾
 - 연간 수입보험료가 50억 엔 이내인 경우에만 소액단기보험업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험회사로 면허를 취득해야 함.

9) 2004년 일본 총무성이 조사한 일본의 근거법이 없이 운영되는 공제를 보면 임의단체는 422개, 기업내 공제는 103개 단체, 공익법인 운영공제 159개 등 총 684개로 나타났음. 일본공제연구회(2007), 『공제사업과 일본사회』, 매일경제신문사, p. 220.

10) 2012년 현재 소액단기보험업으로 67개사가 등록하였음.

11) 일본 「보험업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 3에 열거되어 있음.

〈표 4〉 소액단기보험업의 특징

구분		소액단기보험업	보험회사
진입 요건	회사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규제방법	등록제	면허제
	최저자본금	1000만 엔	10억 엔
	사업규모	연간보험료 50억 엔 이하	제한 없음
	취급상품	소액 1000만 엔 이하, 보험기간 2년, 월납식	제한 없음
행위 규제	모집방법	소액단기모집인	제한 없음
	자산운용	예·적금, 국채, 지방채로 제한	제한 없음
	건전성규제	책임준비금, 정보공시, 솔벤시규제, 업무보고 등	
계약자보호		영업보증금공탁	계약자보증기구

자료: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에서 자료 정리.

■ “소액”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소액단기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소액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이 단기인 상품으로 제한되고 있음.

-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보험 300만 엔(복수계약은 1,500만 엔)이하, 의료보험 80만 엔(복수계약 240만 엔) 이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복수계약 1,500만 엔),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600만 엔(복수계약 3,000만 엔), 상해사망보험 600만 엔(복수계약 1,500만 엔), 손해보험은 1,000만 엔 이하로 한정됨.
- 보험기간은 사망 및 의료보험은 1년이고, 손해보험은 2년임.
- 상품 인가는 사전 보고제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판매 60일 전에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책임준비금적립, 솔벤시(Solvency)규제 등 건전성 규제는 일반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산운용과 파산 시 계약자보호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

- 자산운용의 경우 예·적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큰 자산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는 손·생보별로 분리 운영되는 보험 계약자 보호 기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영업보증금¹²⁾을 매년 공탁해야 함.

12) 공탁 영업보증금은 매년 보유보험료의 5%와 1,000만 엔을 합한 금액임.

■ 소액단기보험업자도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이 가능함.

- 이와 반대로 보험회사¹³⁾가 소액단기보험업자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특화보험시장 또는 지역별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4. 시사점



■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내의 공제 등 유사보험은 보험회사와의 규제차이, 독점적 지위 등으로 소비자 편익 훼손,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미국, 독일(유럽), 일본과 같이 공제 등 유사보험을 「보험업법」 적용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임.

- 특히 일본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인가받은 공제와 캡티브 성격의 공제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업법」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업법」의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은 「보험법」 제3편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소규모공제사업의 범위도 감독당국이 정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 상호교환보험((reciprocal), 로이드보험, 연대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기타 보험조직으로 규정하여 감독하고 있음.

■ 현재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과 관련한 조항이 있지만¹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감독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 모색을 위해서는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 확대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회사설립 자본금을 크게 낮춘 소규모보험업을 신설하고 이에 적합한 진입규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은 준비기간을 거쳐 3단계로 추진을 검토함(〈표 5〉 참조).
 - 1단계는 근거법이 없이 불특정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공제에 대해 적용함.

13) 동경해상, 아오이보험, 富士보험은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14) 현재 「보험업법」상에서 공제관련조항은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공제업과 보험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제업자에게 기초서류 해당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 2단계에서는 근거법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공제와 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되 기금을 각출하지 않는 공제에 대해 적용함.
- 3단계로 근거법이 있지만 특정 계약자와 기금을 각출하는 공제(상호회사)에 대해 적용함.

〈표 5〉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단계(예시)

계약자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보험 계약자	불특정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공제	소규모보험업(근거법 없는 공제)	소규모보험업 (근거법있는공제)	
	특정	공제	공제	(기금불각출공제)	소규모보험업 (계약자특정공제)
				공제	(기금각출공제)
					(기금각출공제)
					상호회사

■ 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업에 대한 일관된 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보험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제기관들이 영위하는 특수한 리스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kiri